

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14. 2. 26.
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개정안에서 삭제된 “용감한 구민상” 을 현행대로 유지, 타인의 생명·재산을 보호하거나 질서 유지에 헌신하는 주민들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.

2. 수정내용

“체육상” 을 “체육상, 용감한 구민상” 으로, “6개 부문” 을 “7개 부문” 으로 함.(안 제9조제2항)

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2항 중 “체육상”을 “체육상, 용감한 구민상”으로, “6개 부문”을 “7개 부문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9조(구민상) ① 구민상은 밝고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한 자 중에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문화상, 용감한 구민상, 장한어버이상, 효행상, 봉사상, 모범청소년상의 6개부문으로 한다.</p> <p>③ 구민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</p>	<p>제9조(구민상) ① ----- ----- 살기 좋은 내 고장 ----- 3년 이상 ----- ----- ----- 예외로 한다.</p> <p>② ----- 문화상, 체육상, 장한어버이상, 효행·선행상, 봉사상, 지역발전상의 6개 부문 -----.</p> <p>③ ----- 시행에 -----</p>	<p>제9조(구민상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체육상, 용감한 구민상 ----- ----- 7개 부문 -----.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